E - 6 - 2012

전기개폐장치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o 작성자: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재희 교수

o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

o 제·개정 경과

- 2009년 7월 KOSHA CODE 전기분야제정위원회 심의

- 2012년 4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- KOSHA GUIDE E-88-2011(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)
 - KOSHA GUIDE E-103-2011(저압감전방지장치 등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)
 - KOSHA GUIDE E-116-2011(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)
 - HSE, Electrical switchgear and safety: A concise guide for users, Guidance INDG 372
- o 관련법령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(전기로인한 위험방지) 제1절 (전기기계·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)
- o 기술지침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월 2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전기개폐장치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가이드는 전기개폐장치의 사용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- (1) 이 가이드는 정격전압 교류 400 V 이상 33 kV 이하의 3상 개폐장치의 선정·사용·정비시 적용한다. 개폐장치는 차단기·개폐기·퓨즈·단로기·고압접촉자 등으로 구성되며, 차단매체는 공기·기름·가스·진공 등을 사용한다.
- (2) 이 가이드는 직류 차단기, 단상 차단기, 저압 배선용차단기, 축소형 차단기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.

3. 정의

- (1)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"개폐장치(Switchgear)"라 함은 전기회로를 개폐, 복구 및 전환하는 접속 부품 또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갖춘 장치를 말한다.
- (나) "차단기(Circuit breaker)"라 함은 수동으로 전선로를 개폐하도록 설계되고, 정격상태 하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 과전류의 손상 없이 자동으로 회로를 개방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.
- (다) "절연유(Insulating oil)"라 함은 전기의 절연을 목적으로 원유로부터 분할 증류해서 얻어진 것을 말하며, 유입변압기, 유입차단기, 유입케이블, 유입 커패시터 등에 사용된다.
- (라) "SF₆(Sulphur hexafluoride)"라 함은 황 원자를 중심으로 플루오린 원자 가 정팔면체 구조를 취하고 있는 육플루오린화황(통용: 육불화황, 헥사플

E - 6 - 2012

루오린화 황, 육플루오르화 황)으로서, 높은 절연성능으로 변압기, 절연 개폐장치 등의 절연 매체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

- (마) "진공차단기(Vacuum circuit breaker)"라 함은 차단접점이 밀봉된 진공용기 내에 장착되어 있는 차단기를 말한다. 가동전극은 벨로즈(Bellose)에 의해서 분리되며, 차단시 전극으로부터 증발된 금속증기에 의해 아크가 발생하고, 이 아크는 금속증기 입자가 고체면에서 응축될 때 소멸한다.
- (바) "단락용량(Short-circuit capacity)"이라 함은 전력시스템에서 삼상 단락사고 시 고장점에 전력이 유입되었을 때 계통이 장애를 입지 않는 최대 가상전력을 말한다.
- (사) "트립장치(Tripping)"라 함은 보호계전기 작동으로 차단기를 차단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보조차단기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 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개폐장치의 안전관리시스템

4.1 안전관리시스템

개폐장치의 사용자는 안전한 운전과 전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, 이 시스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(1) 장치의 설치, 시운전, 작동, 정비, 철거 등의 절차
- (2) 적절한 문서관리 시스템
- (3) 책임과 교육 요구사항의 정의
- (4) 절차의 유효성 감사

4.2 문서

(1) 개폐장치의 사용자는 이용할 수 있는 개폐장치에 대한 문서, 즉 전기도면· 기기 등록대장·정비기록 등을 갖고 있어야 하며, 이러한 문서들은 긴급 시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.

E - 6 - 2012

- (가) 개폐장치와 그 설치 위치를 포함한 여러 품목들 사이의 상호접속을 나타 내는 전기결선도
- (나) 모든 지점에서의 고장 정도
- (다) 기기등록 대장의 일부로 설비의 종류 및 제조사, 일련번호와 제조년도, 설치일, 정격전압과 전류, 단락 용량, 그리고 작동 메커니즘과 같은 세부 사항 포함
- (라) 과도한 응력 등의 운전 제약조건에 대한 세부사항
- (마) 개폐장치 각 부품의 정비기록
- (바) 차단기의 최근 정비 후에 고장 제거 조작횟수
- (사)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
- (아) 유입차단기용 아크 제어장치가 있는지의 여부
- (2) 저압 개폐장치에서의 기본적인 문서에는 성능검정 인증서와 정기검사 보고 서를 포함할 수 있다.

5. 안전작업절차

5.1 개폐장치의 위험성 평가

- (1) 문서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폐장치의 잠재위험성과 문제점을 평가하여야 한다. 여기에는 개폐장치의 과도한 응력, 오조작 방지 손잡이(Anti-reflex handle)의 부재, 적절한 화재방지조치가 미흡한 설비의 수동운전 등을 포함할 수 있다.
- (2) 위 평가에서는 설비와 전선로의 안전한 운전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. 이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통전 시 과도한 응력을 받는 개폐장치의 작동금지
- (나) 통전시 개폐장치에 접근 금지
- (다) 고장 수준이 감소되도록 회로를 재구성
- (라) 전압이 인가된 경우에 수동조작 개폐장치의 조작 금지
- (마) 과도하게 응력을 받은 개폐장치의 교체
- (3) 평가결과 긴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.

E - 6 - 2012

- (가) 과도하게 응력을 받은 개폐장치의 교체
- (나) 오조작 방지 손잡이의 설치
- (다) 화재방지 수단의 보강

5.2 개폐장치의 안전작업절차

- (1) 안전작업절차를 수립하고 개폐장치의 운전, 검사 및 정비 그리고 시험을 위한 조치는 자격자가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개폐장치와 관련한 임무, 권한,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,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3) 안전작업절차는 제한구역지침, 안전작업허가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.

5.3 교육

- (1) 개폐장치의 운전, 검사 및 정비, 시험 등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안전작업절 차를 숙지하여야 한다.
- (2) 개폐장치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6. 개폐장치의 검사 및 정비

6.1 검사

- (1) 개폐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각종 개폐장치의 절연유 및 SF_6 에 관한 취급, 청소, 오염방지, 처분 등의 절차는 관련규정의 절차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.
- (3) 개폐장치의 검사 후 다음과 같은 정비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.

E - 6 - 2012

- (가) 즉시(개폐장치가 위험한 경우)
- (나) 가능한 한 빨리
- (다) 다음의 계획정비기간 중
- (4) 개폐장치의 검사시 다음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가) 개폐장치 설치장소의 구획시설(펜스, 담장 등), 습기, 일반근로자의 접근 가능성, 소화설비의 설치상태, 청결상태 등
- (나) 개폐장치의 부식, 절연유 액위, 라벨의 부착, 계측 및 보호장치 등의 설치 상태
- (다) 개폐장치 설치장소에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 상태의 흔적
 - 고온상태
 - 탄화흔적 또는 오존냄새
 - 절연유의 누설 등

6.2 정비

- (1) 정비는 정해진 주기에 의해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.
- (2) 정비의 주기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(가) 개폐장치의 종류(유입차단기, SF₆ 차단기 혹은 진공 차단기 등)
- (나) 사용연수
- (다) 작동횟수
- (3) 개폐장치의 정비이력을 기록, 분석하여 정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7. 개폐장치의 교체

- (1) 개폐장치를 교체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(가) 보호장치 및 제어장치의 작동상태
- (나) 최신의 안전기준에 의한 연동시스템 및 접지시스템 요구사항
- (다) 단락용량

E - 6 - 2012

- (라) 필요시 설치장소의 환기상태
- (마) 교체장비의 정격
- (2) 설비운용을 위한 예비품의 확보는 부싱, 변류기 등의 전략적 품목과 다음의 일상적 품목을 구비하여야 한다.
- (가) 소호접점(Arcing contact)
- (나) 유입가스 또는 절연유
- (다) 개스킷
- (라) 트립코일 등

8. 화재예방

8.1 개폐장치 설치장소의 구획

개폐장치의 설치장소에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.

8.2 소화설비

- (1) 개폐장치의 설치장소에는 하론 또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소화 매체를 사용한다. 다만, 하론은 환경적인 고려때문에 이상적인 선택이 아니므로, 화재위험이 특히 심각하고 인접한 설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다.
- (2) 상기 (1)항의 소화설비는 화재 탐지시 자동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하기 전 소화설비가 작동된 경우, 근로자가 수동으로 소화설비를 변환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.
- (3) 해당지역에 경고표지와 지시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, 이 내용을 안전작업절 차서에 포함시켜야 한다.
- (4) 휴대용 소화기의 사용과 공급,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검토하여야

E - 6 - 2012

한다. 문제가 밝혀진 곳에는 이동형 소화기와 고정식 소화설비를 함께 고려하여 교체, 재충전, 재배치와 같은 수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.

8.3 화재예방과 자동화재 탐지설비

- (1) 개폐장치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(가) 장비의 교체 혹은 유지보수 후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작업자의 역량강화 및 안전작업절차의 준수
 - (나) 절연유 또는 절연특성에 대한 지속적 감시
 - (다) 점화원의 제어
- (라) 청결상태 유지
- (2) 개폐장치 설치장소에는 화재를 초기에 탐지하여 경보하기 위한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,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하여 소화설비와 연동 되어야 한다.